

# 청렴 경기교육!

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
##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공익제보란?

교직원이 교육기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보하는 것

### ▶ 공익제보 대상은?

부정행위, 공익침해행위, 부정청탁 및 금수등 수수행위,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(항의, 호소, 청원, 의견 등의 일반민원과는 구분됩니다)

※ 관련: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▶ 공익제보는 이렇게

#### 신고서 기재사항

- 신고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-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
- 공익제보 내용과 증거
-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

#### 제보방법

-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에 접속  
- 온라인 제보(우편, 방문, 팩스로도 가능)
- 내부 공익제보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담변호사(안심호루라기변호사)를 통한 비밀명 대리신고 가능
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에서 신고하기



### ▶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

비밀보장(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), 불이익조치 금지, 신변보호 조치, 포상금 지급 등



## 불법찬조금 조성과 집행을 금지합니다.

### ▶ 불법찬조금이란?

학부모단체(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 등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

### ▶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

-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을 위해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모금·집행
- 운동부 운영(인건비 보조, 출전비, 간식비 등)을 위해 모금하여 임의 집행
- 교직원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할당·모금

### ▶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

학생복지, 운동부 운영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


청렴은 경기교육의 **자존심입니다!**

청렴이 미래가 되는  
**경기교육**  
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



#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합니다.

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.

##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절차

(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)

###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

-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
- 부당한 업무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(필요 시 소속기관장이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취소/변경 등 조치 가능)  
※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소명 및 상담으로 받는 불이익 없음

## 존중과 배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

(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)

- 사적노무 요구 금지(제15조의2)
-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(제15조의3)
-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(제16조의 2)

부정청탁은 받지도, 하지도 않습니다.

### 부정청탁이란,

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·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수행할 것을 청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.

## 부정청탁의 근절을 위하여

-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,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은 경우,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.
- 부당한 청탁이 아닌, 정당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합니다.

# 경기도교육청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습니다.

## 금품등의 수수 금지 내용 (청탁금지법 제8조)

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
-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
  -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
  - 공직자등뿐 아니라, 일반인이 제공한 경우도 처벌대상

### 이러한 금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  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액 범위\* 안의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
- (단,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, 선물 등을 주고 받을 수 없음)

| 구분   | 기준  |
|------|---|
| 경조사비 | 5만원(화환·조화 1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물   | 5만원(농수산물·가공품 10만원)<br>※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(기프티콘 포함)은 허용되지 않음 |
| 음식물  | 3만원   |

-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- 공직자등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)이 제공하는 금품등
- 직원상조회·동호인회·동창회·향우회·친목회·종교단체·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
-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
-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
## 금품등 수수의 근절을 위하여

-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등을 수령한 경우,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.
- 식사·선물 대신 감사한 마음만 전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.

# 경기도교육청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섭니다.

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관계를 자양합니다.

-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시 신고(제5조의6)
-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(제16조)
-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사행성 오락 금지(제17조)
-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 행위 시 사전 신고(제20조)
-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제한(제21조)

##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(2020.9.4.)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(제19조제2항)  
※ 기준에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여야 했으나,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(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) 신고

##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,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외부강의등이란? (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)  
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
-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,  
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그 대가로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\*의 수수 금지  
※ 학교 소속 교직원: 시간당 100만원  
교육(자원)청 및 직속기관 등 소속 직원: 시간당 40만원\*
- \* 1회 총 수수액은 1시간당 단가의 100분의 150 이하

## 청렴 경기교육,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끌어갑니다.

### 기관별 행동 강령책임관 (청탁방지담당관 겸임)

| 구분 | 본청             | 교육지원청  | 직속기관     | 각급학교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직  | 감사관/<br>운영지원과장 | 경영지원과장 | 교육지원부장 등 | 교감(원감) 등 |

※ 행동강령의 교육과 위반여부 상담, 위반사항의 조사 등 임무 수행  
※ 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 소속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